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5. 27 선고 2020가합2222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민

담당변호사 조함찬

피 고 D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

담당변호사 이두성

변 론 종 결 2021. 4. 15.

판 결 선 고 2021. 5. 2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8. 5. 30.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50%는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 위 적 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9,6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2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.

예 비 적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7,88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2. 28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들이고, 망 E(이하 ‘망인’이라고 한다)은 원고들과 피고의 모친으로서 2018. 5. 30. 사망하였다.

나. 원고들과 피고의 부친인 망 F과 망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로는 본래 원고들과 피고 이외에도 G이 있으나, G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망 F을 부친으로, 망 H을 모친으로 하여 G이 그들 사이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다. 그러나 G은 2020. 8. 21.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G과 망 H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고, G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(위 법원 2020드단3775)을 선고받았으며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다. 망인은 1986. 6. 5. I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이하 ‘이 사건 조합’이라고 한다)의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중랑구 J 대 106.8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고 한다)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,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5. 3. 30. 접수 제32555호로 2015. 3. 11.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라. 망인은 2017. 9. 25. 공증인가 법무법인 K의 공증인 변호사 L로 하여금 M과 N이 증인으로 참여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유언을 청취한 후 증서 2017년 제753호로 유언공정증서(이하 '이 사건 유언공정증서'라고 한다)를 작성하게 하는 한편,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유언집행인으로 피고를 지정하였다.

1. 유언자는 아래의 목적 부동산을 아들 D에게 유증하기로 한다.

가. 이 사건 토지. 이상 끝.

마.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2018. 11. 26. 접수 제79150호로 2018. 11. 19.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, 같은 날 위 등기소 접수 제79151호로 2018. 11. 19.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순차로 마쳐졌다.

바. 한편, 이 사건 조합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이 완료됨에 따라 중량구청장은 2021. 1. 7. 위 사업의 이전고시(이 사건 조합 고시 O)를 하였다. 그 후 위 사업 시행 결과 신축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고 한다)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2. 3. 접수 제2212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, 같은 날 위 법원 접수 제22138호로 2018. 11. 19.자 신탁 및 2021. 1. 7.자 위 이전고시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, 10, 14호증, 을가 제2호증, 을나 제3호증 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

가. 원고들 주장의 요지

1) 주위적 청구

가)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

망인은 사망하기 전부터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아 왔는바,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원인인 망인의 유증(이하 '이 사건 유증'이라고 한다)이 이루어진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

망인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여서 이 사건 유증은 무효이므로,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의 각 상속 비율에 해당하는 별지 2 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8. 5. 30.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) 금전지급 청구

피고는 망인을 모시고 살면서 망인의 예금통장을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9. 4. 1.부터 2018. 8. 11.까지의 기간 동안 망인의 P은행 예금계좌(계좌번호 1 생략)로 입금된 금원 중 망인의 의료비 등으로 지출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298,000,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, 원고들에게 위 298,000,000원 중 원고들의 각 상속 지분(1/5)에 해당하는 각 59,600,000원(= $298,000,000원 \times 1/5$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예비적 청구(유류분 반환 청구)

설령, 이 사건 유증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유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,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인 각 57,880,000원[= (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817,000,000원 - 상속채무 238,200,000원) $\times$ 1/2(유류분 비율) $\times$ 1/5(상속 지분)]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 주장의 요지

1) 이 사건 유증 당시 망인은 유언의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나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유증은 유효하므로, 이 사건 유증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.

2)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은 피고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망인의 P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298,000,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위 청구 부분도 이유 없다.

3)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 개시 시점인 망인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여 계산해야 한다.

3. 판단

가.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에 관한 판단

1) 관련 법리

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또는 지능을 의미하고,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(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1다10113 판결 등 참조).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(대법원 2009. 1. 15.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).

2) 구체적 판단

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, 갑 제7, 9, 15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Q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축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, 망인은 이 사건 유증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그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고, 이 법원의 법무법인 K 대표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.

가) 이 법원의 Q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축탁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망인에 대하여 R요양병원에서 시행한 인지기능 검사에서 2012. 1. 3. MMSE 24, GDS 3으로 기록되어 있어 망인은 이때부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됨.

○ 망인의 치매에 대한 약물 치료로서 2017. 1. 23. 아리셉트 10mg 반 알이 투여되었음.

○ 법률행위는 치매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GDS 4, CDR 1을 넘어가면 힘들다고 판단됨. GDS 4, CDR 1에서도 상태에 따라 부분적으로 법률행위가 힘들 수 있음.

○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사망시까지 망인의 알츠하이머 치매 질환의 정도

◎ 2012. 1. 3. MMSE 24, GDS 3 (경도 치매)

◎ 2015. 11. 5. MMSE 20, GDS 3 (경도 치매)

◎ 2017. 10. 11. MMSE 17, GDS 4 (경도 치매)

◎ 2017. 12. 22. MMSE 21, GDS 1 (경도 치매)

◎ 2018. 4. 23. MMSE 18, GDS 3 (중증 치매)

○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는 신경 퇴행성 치매로 시간이 지나면 점차 인지는 나빠지는 것이 일반적임.

○ GDS 5, 6, 7 및 CDR 2, 3, 4, 5의 경우 법률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상태이고, GDS 4, CDR 1에서도 일부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.

○ 2017년에는 2017. 10. 11. MMSE 17, GDS 4 경도 치매로 자신의 부동산을 여러 상속인 중 1명에게만 유증한다는 인식을 하고 그 의미를 이해한 채 유증을 할 수 있는 기능에 일부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.

○ 망인은 2017년도에는 성년후견인 선정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됨.

나)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, 망인은 이 사건 유증이 있기 약 8년 전인 2009. 5. 26. 이미 피질하혈관성 치매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내역이 발견되는 등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치매 질환을 앓아 왔고, 위 진료기록 감정축탁결과에 의하면, 망인의 치매 질환의 정도는 진단 이후 사망시까지 점차 악화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.

다)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. 10. 11. 이루어진 GDS 검사 결과 망인은 ‘GDS 4’로 평가되었는바, 위 시기는 이 사건 유증이 이루어진 2017. 9. 25.과 비교적 근접한 시기여서 이 사건 유증 당시 망인의 치매 질환의 정도 역시 2017. 10. 11.의 위 검사 결과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. 그런데 ‘GDS 4’의 경우 치매 질환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법률행위가 힘들 수도 있으며, 이러한 이유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유증 당시 망인이 이 사건 유증의 의미를 이해한 채 유증을 할 수 있는 기능에 일부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.

라) 이 사건 유증은 유증자인 망인이 유증을 받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일상적인 의미 외에도, 이로 인해 유증 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외의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및 G의 법정상속분이 침해될 수도 있는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.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유증 당시 망인의 치매 질환의 정도 및 망인이 이 사건 유증 당시 만 87세의 고령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, 망인은 이 사건 유증으로 인해 그와 같은 법률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.

3) 소결론

결국, 이 사건 유증은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고,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유증에 터 잡은 것이므로 원인 무효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하며, 이 경우 부동산에 관한 공동상속인 중 1인 단독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의 상속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하므로, 이러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단독 명의로 등기를 경로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서만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(대법원 1994. 12. 22. 선고 92다3489 판결 등 참조).

한편,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그 성격이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서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된다(대법원 2001. 9. 20.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). 그런데 소유권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각 등기가 마쳐진 경우, 후순위 등기의 말소가 가능한지에 관계없이 전 순위 등기의 말소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으므로(대법원 1995. 10. 12. 선고 94다47483 판결 등 참조),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, 원고들은 자신들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 지분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, 이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자신들의 상속 지분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원고들의 상속 지분인 별지 2 목록 기재 지분(각 1/5)에 관하여 2018. 5. 30.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[다만,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, 이 부분 주위적 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인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].

나.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

살피건대,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09. 4. 1.부터 2018. 8. 11.까지의 기간 동안 망인의 P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298,000,000원을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오히려 을나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들이 이 부분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를 경찰에 형사 고소한 사건에서 담당 경찰서인 서울구로경찰서는 수사 이후 피고에 대하여 ‘혐의 없음’의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위 고소 사건을 송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.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광섭, 판사 하석찬, 판사 권원명

별지 1

부동산 목록

1층의 건물의 표시

서울특별시 중랑구 동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중랑구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29층 공동주택(아파트)

1층 498.652㎡

2층 559.491㎡

3층 559.491㎡

4층 559.491㎡

5층 559.491㎡

6층 559.491㎡

7층 559.491㎡

8층 559.491㎡

9층 559.491㎡

10층 559.491㎡

11층 559.491㎡

12층 559.491㎡

13층 559.491㎡

14층 559.491㎡

15층 559.491㎡

16층 559.491㎡

17층 559.491㎡

18층 559.491㎡

19층 559.491㎡

20층 559.491㎡

21층 559.491㎡

22층 559.491㎡

23층 559.491㎡

24층 559.491㎡

25층 559.491㎡

26층 559.491㎡

27층 559.491㎡

28층 559.491㎡

29층 559.491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

건물번호

면 적 84.87㎡

대지권의 표시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: 서울특별시 중랑구 대 55326.5㎡

대지권 종류 :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 비율 : 55326.5분의 37.505. 끝.

별지 2

지분 목록

- 1. 원고 의 지분 1/5
- 2. 원고 의 지분 1/5
- 3. 원고 의 지분 1/5. 끝.

